의정부우편집중국 2026년 제1회 기간제 우정실무원 채용 공고

의정부우편집중국에서 근무할 기간제 우정실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23.

의정부우편집중국장

1. 기간제 우정실무원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 형태	채용 예정 인원	담당업무	비고
기간제 우정실무원 (일반)	석근 (19:00~23:30)	6명	ㅇ 우편물 구분(등기통상) 및 기타 부대업무 ㅇ 우편자루 투낭 및 개낭 작업 (30kg이상 작업 가능 체력 요함)	-

※ 근무 예정 부서(근무지역): 의정부우편집중국(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98번길 65)

2. 근무 조건

ㅇ 신분: 기간제 우정실무원(비공무원)

ㅇ 근로계약기간 : **2026. 2. 9.(예정) ~ 2026. 3. 6.(예정)까지**

※ 추후 계약연장 및 공무직 전환 가능

※ 공무직 전환 시 내,외부 평가 등 인사위원회를 통해 진행

ㅇ 보수(기본급+수당)

- 기본급: 주간 시급 10,320원(22시~익06시는 야간 시급 적용, 주휴수당 있음)
- 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해당자한), 급식비
- 기타: 4대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가입,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맞춤형 복지제도(해당자한)

ㅇ 근무시간: 주 5일 / 1일 4시간

- 휴게시간: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ㅇ 휴가: 연차유급휴가, 특별유급휴가 등

3. 응시 자격 및 요건

※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가. 응시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2조(근무상한 연령)
-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 근로자는 근무 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 단, 관리 규정 제62조 3항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나. 책임감이 강하고 근면・성실한 자

다. 외국인 및 복수 국적자는 응시 불가

라. 응시자격 제한

-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우편 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 불가
-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나.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자격(ITQ),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인터넷정보관리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발행 한) 중 1개 이상 소지자

다. 근무경력자

- 우체국(우편집중국 포함)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시험 방법

시험단계 / 채용 분야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기간제 우정실무원(일반)	서류전형	면접시험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요건, 결격 사유 등을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
- 제출된 서류 작성의 성실성 평가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 요소: 공무수행에 필요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과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과 발전 가능성 등

6. 응시서류 접수

가. 원서교부: 의정부우편집중국, 알바몬 누리집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 표준응시서류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양식은 반드시 게시된 양식을 출력 사용

나. 공고기간: 2026. 1.23.(금) ~ 2026. 1.30.(금), 8일간

다. 접수기간: 2026. 1.23.(금) ~ 2026. 1.30.(금) 18시까지, 8일간

※ 방문접수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11:30 ~ 13:00 접수불가)

※ 접수기간 이후 접수분은 지원 불인정

라. 접수처: 의정부우편집중국 2층 총괄계(031-850-0618)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98번길 65 의정부우편집중국
(전자우편 접수시) tax40007620@korea.kr

마. 접수방법: E-mail,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모든 접수분은 2026. 1.30.(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E-mail: tax40007620@korea.kr (확인 후 응시자에게 접수 사항 문자 안내)

※ E-mail 접수시 응시서류의 서명을 반드시 기재 후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 우편접수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98번길 65 의정부우편집중국 물류총괄과 비공무원 채용담당 앞 (우 14067)
- 봉투 겉표지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응시원서' 글자표기
-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응시원서의 분실 등 서류 미접수시,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채용부서의 접수 확인 답신이 없는 경우, 기한 내 채용부서를 통해 접수 완료 여부 확인

7. 제출서류: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가. 응시원서 1부 [붙임2] **※ 이력서에 지원근무형태, 메일주소, 본인서명 반드시 기재**

나. 이력서 1부 [붙임3]

다. 자기소개서 1부 [붙임4]

라.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붙임5]

마.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 1부 [붙임6]

바. 공정채용확인서 1부 [붙임7]

사.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붙임8]
- 경력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아. 정보화관련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우대요건 증빙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각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누락(미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8.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모집공고: 2026. 1.23.(금) ~ 2026. 1.30.(금), 8일간

나. 응시원서 접수 기간: 2026. 1.23.(금)~2026. 1.30.(금) 18시까지, 8일간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2.2.(월)

※ 개별통보 및 의정부우편집중국 홈페이지 공고

라. 면접시험: 2026. 2.4.(수) 14:00 ~

마. 최종합격자 발표: 2026. 2.6.(금)

※ 개별통보 및 의정부우편집중국 홈페이지 공고

9.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적격자 중 면접점수 상위 순위자부터 채용목표 인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나.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라. 예비합격자 선발: 면접시험에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마. 추가합격: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채용 포기, 결격 사유, 계약해지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면접시험 점수 상위 순위자부터 연락하여 근무 가능 여부 확인)

10.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접수 기간 엄수 바랍니다.**

나. 본 시험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의정부우편집중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에 초과되거나 이하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채용인원을 축소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결격 사유)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의정부우편집중국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의정부우편집중국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반환에 소용되는 비용은 구인자가 부담합니다.
- 의정부우편집중국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의 다음날로부터 30일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바. **접수마감 후 응시인원이 전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거나(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같을 경우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공고합니다.**

- **재공고했음에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현재까지 응시인원을 대상으로 이후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8조(시간외 근로) ① 사용자는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여건에 맞는 근로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근로가 불가한 경우 예비합격자 차순위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우편집중국 물류총괄과 총괄계(031-850-06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